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10.21. 시행)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접수 절차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신설(안 제11조)

나. 공익신고 대행 권한 증명서류 중 신고자의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삭제(안 제12조)

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라.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안 제17조제3항)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 개정사항 반영

마. 보상금·보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

- 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환수’까지 확대 등
- 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추가(안 제29조제1항제4호)
- 사.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30조제3호)
- 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으로 확대
- 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처리절차 유의사항, 이의신청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공익신고자 협조사항을 안내하도록 서식 신설(별지 제7호부터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번만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

에 따라”로, “해당 조사기관”을 “관할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 공익신고를”를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를 “공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 “공직자”로 한다.

제24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으로,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를 “취업규칙 등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으로, “공익신고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 인사상 ·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 · 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u>접수증</u> 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 ----- ----- ----- ----- --- <u>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제1항의 공익신고</u> 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 ----- ---- <u>공익신고</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u>	<삭 제>

3. 4. (생략)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생략)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한번만 다시</u>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u>공익신고의 조사</u>)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u>안내문</u>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시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u>공익신고의 조사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u>를 ---. ③ -----
--	--

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
사결과를 통보한다.

1. (생략)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
향

3. ~ 5. (생략)

④ ~ ⑦ (생략)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
신고가 국토교통부의 관할에 속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
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
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
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
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
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는 조사-----

-----.

1. (현행과 같음)

2. ----- 종료 -----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

-----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

----- 관할
조사기관 -----

-----.

② (생 략)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생 략)

1. ~ 8.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 조사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의 종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방문 · 우편 · 인터넷 ·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

-----.

제20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 · 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
----- 공익신고자등-----
-----.

② 누구든지 -----

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 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 공익신고자등에게 -----

-----.

③ -----

-- 공익신고자등-----

-----.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
----- 공직자가 -----

-----.

② -----

공직자-----

-----.

제24조(신변보호 안내) -----
----- 공익신고자등이 -----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 설>

----- 공익신고자등으로 -----

---.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

----- 이를 -----

-----.

②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 ----- 취업규칙 등에 따른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신고등
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
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
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
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
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
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
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
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

----- 공익신고자등-----
----- 경우 이를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

-- 공익신고자등에게 -----
-----.

1. ~ 8.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6. (생략)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생략)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

-----.

1. -----

----- 3년 -----

2. (현행과 같음)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u>	4. <u>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은 <u>공익신고자가</u>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 <u>공익신고자등이</u>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원상회복 관련</u> <u>쟁송절차에</u> 소요된 비용	3. <u>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u>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